

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(한의예과, 한의학과) 교육프로그램 평가 규정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(한의예과, 한의학과)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평가하고, 평가결과 및 주요 개선점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교육프로그램 평가라 함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.

- ①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사명, 교육과정, 학생의 향상 정도, 교육 성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핵심 측면,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나타내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을 포함한다.
- ② 교육 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는 프로그램 구조, 구성, 기간,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.
- ③ 교육프로그램 평가체제는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이 있고, 이를 실행하는 담당기구(교육실, 학과 또는 센터 등)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교육프로그램 평가 활동)

- ①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은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위원회)가 주관한다.
- ② 교육프로그램 평가활동은 한의학 교육실 평가부가 담당한다.

제4조(평가내용과 방법)

- ① 위원회(교육과정위원회)는 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로서, 정기 보고서를 매 1년 마다 1회 작성하며,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
- ② 교육프로그램 평가에는 과정성과(과목별 성과) 수준에서 사명에 따라 결정한 전체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교육성과 도달률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다.
- ③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정기적 평가에는 프로그램의 구조, 구성, 기간,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활용 등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다.
- ④ 교육프로그램 평가는 졸업생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.
- ⑤ 교수자(교강사, 전공의 등)와 학생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, 분석하고 개선점과 개선계획에 대하여 교수자와 학생에게 알린다.

제5조(활용)

- ① 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 범위, 방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파악한 주요 개선점 및 약점, 문제점 등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계획에 반영한다.
- ④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.

제6조(재정) 한의과대학 학장은 교육프로그램 평가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.

제7조(규정 개정) 본 지침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.

부칙

(시행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